| 금융위원회 | 보 도 참 고 자 료 | | |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보도 | 배포 후 즉시 | 배포 | 2020.4.29.(수) |

| 책 임 자 | 금융위 전자금융과장<br>이 한 진(02-2100-2970) | 담 당 자 | 유 원 규 사무관<br>(02-2100-2974) |
|---|---|---|---|

# 제 목 :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이 4.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◈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('20.4.29일) 하였습니다.

◈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·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,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

◈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,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 하에,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「사전예방/차단/단속·처벌/구제」의 全과정에 걸쳐 종합적 ·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·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## 1. 개정 배경

□ **'17년 이후** 보이스피싱 **총피해액이 해마다 폭증**하고, **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**하는 등 **피해의 심각성**도 커졌고,

○ **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**하여, **대포통장*** **범죄처벌을 강화**할 필요성이 **지속적으로 제기**되어 왔습니다.

* 통상 **"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입금 목적으로 양수도·대여된 타인 명의의 계좌"**를 지칭 → **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접근매체 양수도·대여 금지 규정에 근거**하여 처벌

□ 이에 따라, 정부는 **관계기관 합동**으로 **'18.12월**에 **보이스피싱 종합대책**을 발표하였으며 **(※ 상세 내용 : '18.12.18일자 보도자료 참고)**

○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(이하, '통신사기피해환급법')」 개정안이 **4.29일 국회를 통과***하였습니다.

* 전해철의원 대표발의('19.2.12일) → 정무위 통과('20.3.5일) →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('20.4.29일)

## 2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### (1)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

#### 1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

❶ **대포통장 양수도·대여** 등의 행위*에 대한 **처벌(법정형) 강화** : '징역 3년, 벌금 2천만원' → **'징역 5년, 벌금 3천만원'**으로 상향

* (현행 처벌행위 유형) (i) 접근매체를 양도·양수, (ii)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·대차·보관·전달·유통, (iii)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·대차·보관·전달·유통, (iv)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, (v) (i)~(iv)의 행위를 알선·광고

❷ 현행 처벌대상인 **알선·광고** 외에, **대포통장**을 **중개**하거나 **대가를 전제로 권유**하는 **행위도 처벌** : ❶과 동일하게 처벌

❸ **범죄**(보이스피싱 등)**에 이용될 것을** 알면서 **계좌 관련 정보**를 **제공·보관·전달·유통**하는 행위도 **처벌** : ❶과 동일하게 처벌

➡ **(기대 효과)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**되는 **대포통장**에 대한 **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**하고, **조직적 범죄도 예방 가능**※

※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**'징역 3년이하 → 5년이하'** 로 상향시, 대포통장 조직에 **범죄단체조직죄**를 **적용**하여 ①**가중처벌**·②**범죄수익 환수*** 가능

* ①**대포통장** 및 **범죄단체조직죄 동시 적용**시, **경합범으로 가중처벌(1/2)** 가능(최대 징역 7년6월)
②**범죄단체조직죄**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**중대범죄**에 해당하여 **범죄수익 환수** 가능

2 **금융회사등**이 ATM고장 등으로 **이용자의 접근매체(카드등)를 획득**한 경우, 반환을 위한 **본인확인의 법적 근거** 마련

* 전자금융거래법상 **접근매체 '반환'에 대한 본인확인** 관련 규정은 없음
(발급, 갱신, 대체발급에 대해서만 본인확인 여부를 규정)

※ 상기 내용은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은 아니나, **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**('17.8월)을 **반영**한 것임

## (2)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

1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, **보이스피싱 관련 범죄**의 **전과가 있는 자**에 대해서도 **전자금융거래를 제한**

| | 현행 | 개정 |
|---|---|---|
| **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** | 금융회사로부터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통보 받은 경우 (→ 금감원 지정) | 금감원이 지정 취소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지정 |
| **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** | 피해금 환급 절차 종료시 (→ 금감원 지정취소) |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경과시 (→벌금형 : 3년, 징역형 : 5년) |

2 보이스피싱 **피해구제 절차**의 **효율성**을 높이기 위해 **일정금액(3만원) 이하**의 경우 **채권소멸절차*를 개시하지 않도록 함**** [참고 2]

*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에게 귀속된 예금채권을 법원의 재판 없이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절차

** (현행 절차 未개시 사유) (i)지급정지조치 전 민사소송이 계속중, (ii)압류·가압류·가처분의 명령 집행, (iii)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, (iv)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등

➡ **(기대 효과) 실제 피해구제 업무**에 **자원을 집중**하여 **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**하고, **동일 범죄자**에 의해 **반복되는 피해 예방** 가능

## 3.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

□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, **작년까지 지속 증가**하던 **보이스피싱 피해**는 **금년 1분기 들어 감소***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.

* ('19년 1분기) 1,517억 → **('20년 1분기) 958억원** **(37%↓)** [금감원, 잠정]

※ (참고) '17~'19년중 보이스피싱 피해 추세 :
'17년 2,431억(26.4%↑) → '18년 4,440억(82.6%↑) → **'19년 6,720억**(51.4%↑)

○ 이는, **보이스피싱 종합대책**('18.12월) 이후 **금융회사**의 **피해 방지 노력***과 함께 **관계부처**들도 **대응을 강화**하여 왔으며,

* 시중은행이 **악성앱** 탐지시 **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** 기능 도입('19.7월~), **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**('19.11월~), **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**('20.1월, 시행세칙 개정) 등

○ **코로나19**로 인하여 **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감소**한 점 등도 **영향을 미친 것**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, 2분기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**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**할 우려가 있어 **지속적인 예방 노력**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○ 특히, **긴급재난지원금** 등이 **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**나 **지역사랑상품권**으로 지급됨에 따라, 이를 **악용한 악성앱 설치 등이 유도**될 수 있고, **[참고 1]**

○ **소상공인 대출을 사칭**하는 **스미싱 문자도 발생하는** 등,
**코로나19 상황을 악용**한 **보이스피싱 시도 등이 증가**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□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**가족까지도 파괴**하고, 나아가 **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**하는 **사회 문제**입니다.

* **국무총리**께서도 **보이스피싱 강력대처**를 지시 ('20.1.23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
"**보이스피싱**과 같은... **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**하고, **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**할 것...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... **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**해서 대응해 주기 바람"

□ 앞으로도 **금융위원회**는 이번 **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**를 계기로, **관계부처**(과기정통부·방통위·경찰청 등)**와 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**하고,

○ 보이스피싱의 「**사전예방 / 차단 / 단속·처벌 / 구제**」 全 **과정**에 걸쳐 **종합적·체계적 대응을 강화**하는 방안을 **검토·추진**해 나가겠습니다.

※ [참고 1]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
[참고 2]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**금융위원회 대 변 인**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내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## 참고1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

※ 상세 내용은 '20.4.27일 금감원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

□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**보이스피싱, 스미싱***이 발생하고 있으므로

*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→휴대폰에 악성코드 설치→개인정보 탈취, 소액결제 피해 발생 등

○ 전화로 **정부기관, 지자체, 금융기관 등**으로부터 **개인정보, 계좌번호** 등을 **요구**받거나, 코로나19 관련 **저금리 대출** 및 휴대폰 **앱 설치**를 **권유**받으면 **불법 보이스피싱**이 아닌지 주의하고

○ **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, 상품권 도착** 등의 **휴대폰 문자메시지**를 받으면 **스미싱**이 아닌지 유의하여,

- **출처 불분명 메시지**는 **즉시 삭제**하고, 수상한 **인터넷 주소**(URL)는 **클릭**을 **자제***할 필요

*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**무심코 클릭하지 말고, 별도의 확인 절차**(지자체 홈페이지 주소 확인 등)를 거쳐 링크된 인터넷 주소가 **믿을 만한지 여부를 확인**할 필요

| 최근 확인된 스미싱 인터넷 주소 |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상적인 인터넷 주소(주요 사례) |
|---|---|
| ■ https://bit.ly/3aSTMel<br><br>→ "〔긴급재난자금〕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"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<br>(출처: '20.4.14. 방통위 보도자료) | ■ 서울시<br>-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<br>(https://univ.jinhakapply.com/Univ924401.aspx)<br><br>■ 경기도<br>- 재난기본소득 신청(https://basicincome.gg.go.kr/)<br>- 지역화폐 가맹점 찾아보기 & 경기지역화폐<br>(www.gmoney.or.kr/)<br><br>※ 지자체는 "go.kr", 공공기관은 "or.kr"로 끝나는 인터넷 주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하되<br>- 각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, 휴대폰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가 신뢰할 만한지 별도의 확인 절차 필요 |

**참고2** **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**

※ **지급정지**(금융회사) → **채권소멸절차**(금감원·금융회사) → **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**(금감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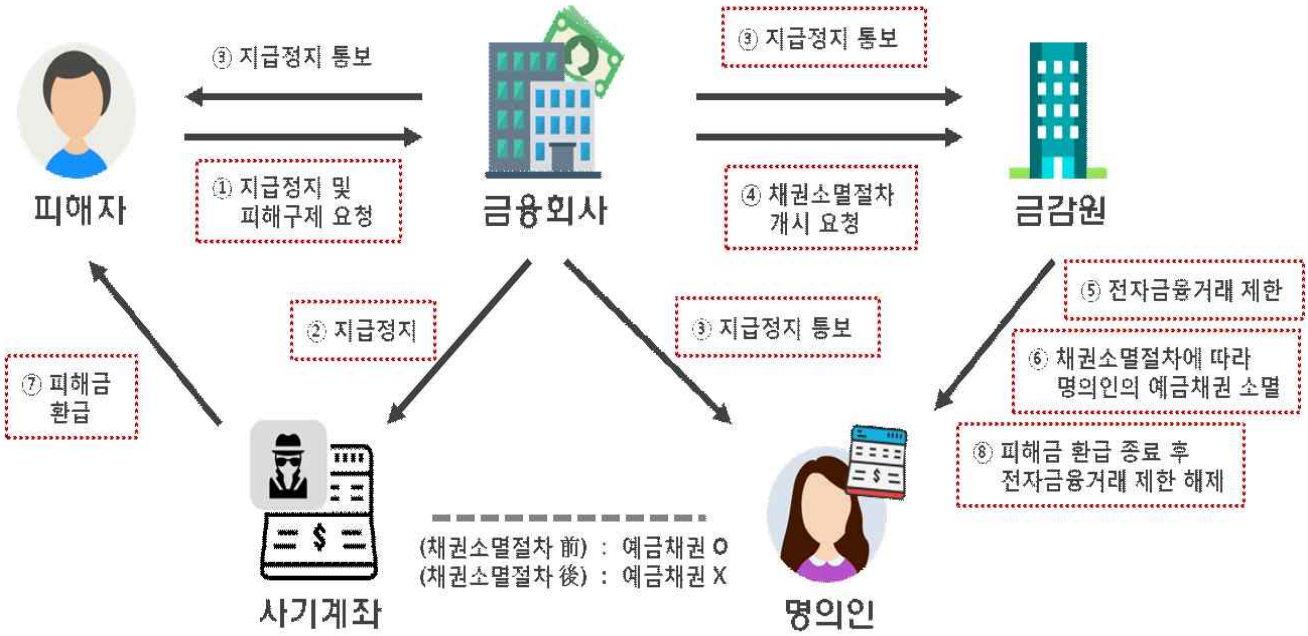


| 절차 | 내용 | 근거법령 |
|---|---|---|
| ① **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** |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(사기계좌)에 대한 지급정지(입출금·이체 금지)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| 통신사기피해환급법(이하 '법') §3① |
| ② **지급정지** |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(입출금·이체 금지) | 법 §4① |
| ③ **지급정지 통보** | 금융회사가 금감원, 명의인,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| 법 §4② |
| ④ **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** |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| 법 §5① |
| ⑤ **전자금융거래 제한** |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| 법 §13의2 |
| ⑥ **채권소멸절차** | ④의 요청에 따라,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| 법 §5② |
| | (이의제기 등 없을시)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| 법 §9① |
| ⑦ **피해금 환급** |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→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| 법 §10① |
| ⑧ **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** |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| 법 §8① |